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이인영·김용만·부승찬

김동아 • 이정문 • 장철민

강준현 · 민병덕 · 박상혁

정준호 · 이춘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,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, 계엄사령관 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·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 의2 및 제8조의2 신설).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등)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은 방해할 수 없으며,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2(국회 권한 및 기능의 제한 금지) 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으며,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조치는 무효로 한다.
 - ② 계엄사령관이 특정 조치의 발령 또는 국회 폐쇄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집회 및 의결을 방해하는 경우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정지 되며, 계엄의 효력을 재개하는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계엄의 효력이 재개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의2(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
	동의 등) ① 대통령이 계엄을
	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
	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
	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	다만,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
	<u>지 아니하다.</u>
	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
	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
	은 방해할 수 없으며, 계엄사령
	관은 국회 기능을 수호하고 국
	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여야
	<u>한다.</u>
<신 설>	제8조의2(국회 권한 및 기능의
	제한 금지) ① 계엄사령관은
	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
	를 발령할 수 없으며, 국회의
	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
	한 경우 그 조치는 무효로 한
	<u>다.</u>
	② 계엄사령관이 특정 조치의
	발령 또는 국회 폐쇄 등의 방
	법으로 국회의 집회 및 의결을

방해하는 경우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며, 계엄의 효력 을 재개하는 국회의 의결이 있 는 경우에 계엄의 효력이 재개 될 수 있다.